〈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u>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 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 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02.26

www.pickizdonut.com jay@pickizdonut.com

[피키즈 도넛타임]

정보공개서

[피키즈 도넛타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03 . 16 .

[피키즈 도넛타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02, 원흥빌딩 101호 피키즈 도넛타임]

[T. 070-4369-1040]

[F. 050-4011-7011]

[가맹상담. (비공개)]

목 차

I.	가맹본부의	!반 현황
п.	가맹본부의	· 맹사업 현황 ·······
Ш.	가맹본부와 .	L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지	의 부담
٧.	영업활동에	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l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l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어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³	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피키즈 도넛타임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02, 원흥빌딩 101호				
피키즈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		대표팩스번호
도넛타임	개인사업자		2021.04.05	윤재익	070-43	369-1040	050.4011.7011
	법인등록번호	i	해당없음 사업자등록번호 309-2		-20-4242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내역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피키즈도넛타임]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피키즈 도넛타임	프리미엄 수제크림 도넛	
상 호	피키즈 도넛타임	도넛을 주 상품으로 한 카페	
상표(서비스표)	피키즈 도넛타임 PICKIZ DONUT TIME Premium & Donut & Gelato & Coffee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40-2162669 호	
광 고	pichiz	심볼	
그 밖의 영업표지	PICKIZ	간판 디자인 (출원번호4020220234948)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134,825	73,648	61,177	118,755	-22,201	-22,181
2022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8,165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1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당사는 2021년 4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2년 9월26일 첫매장을 오픈하여 16개월동안 시범운영을 하였고, 2023년 1월부터 본격 영업을 진행하였기에. 2023년 1년간의 매출자료를 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11177	7110		기간	직위	담당 업무	
			2021.04~현재	피키즈도넛타임대표	총괄	
	윤재익	대표	2017.06~현재	㈜일공일컴퍼니	대표이사	
가맹사업	G 11 1		2011.10~2015.10	㈜세정 이사	아웃도어 본부장	
관련 임원			2003.05~2007.10	㈜제일모직	경영혁신팀	
	진강아	이사	2018.03.~현재.	(주)일공일컴퍼니	경영지원	
			2021.04~현재	피키즈도넛타임실장	카페레시피 개발	
	0.11=1		2017.06~현재	㈜일공일컴퍼니	C.M.O	
가맹사업	윤성환	전무 	2016.03~현재	금빛제작소 대표		
비관련 임원	ㅇ 하스	이사	2017.06~현재	㈜일공일컴퍼니	감사	
рс	윤양숙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식선구(청)	
2023년 12월 31일	1	2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윤재익		가맹사업 경영	2021.04 ~2022.04	쿠쿠스무스카페24 (등록번호: 없음) 이라는 영업표지의 무인카페사업 경영
7027	- "	가맹사업 경영	2022.09~현재	피키즈도넛타임 (등록번호: 없음) 이라는 도넛카페경영

	_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피키즈 도넛타임 PICKIZ DONUT TIME Previous & Corne & Coffee	상표권	2024.03.04 등록	출원번호 40-2022-01570 51 등록번호 40-216266900 00	· 윤재익	2034.3.4.
(S) pickiz	국내상표	2022.12.22. (출원일자)	출원번호 40202202349 48	윤재익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Π. 가맹본부의 [피키즈 도넛타임] 가맹사업 현황

1. [피키즈 도넛타임]을 시작한 날: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2년 9월 26일)

※ 아직 가맹 계약이 없으며, 사업자 등록은 2021년 4월 5일 하였으며, 직영점 영업 시작일 은 2022년 9월26일입니다.

2. [피키즈 도넛타임]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피키즈	피키즈	رب ارد (c	2022 00 26 청계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02
도넛타임	도넛타임	윤재익	2022.09.26~현재	원흥빌딩 101호
(주)일공일	쿠쿠스무스	رار (c	2021.04.01.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9
컴퍼니	카페24	윤재익	~2022.04.30	신화빌딩 806호

3. [피키즈 도넛타임] 업종

영업표지	업종		
피키즈 도넛타임 -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제과제빵	도넛, 커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피키즈 도넛타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1.12.3	1.	20	0221.12.3	31.	2	2023.12.3	1.
\ \\ \\ \\ \\ \\ \\ \\ \\ \\ \\ \\ \\ \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1	0	1	1	0	1
서울	0	0	0	1	0	1	1	0	1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	_
세종	_	_	_	_	_	_	_	-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_	-	_	_	_	_	_	-	_
충북	_	_	_	_	_	_	_	-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피키즈 도넛타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0	0	0	0	0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6. [피키즈 도넛타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피키즈 도넛타임]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어조	가명	생점/직영점의	l 수
十七	경오/이급	경험료기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 $^{\mathbb{Q}}$ 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mathbb{Q}}$

[피키즈 도넛타임]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³.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					7 매출액			
2023년 지역 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울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부산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구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인천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광주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전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울산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기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강원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충북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충남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북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전남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북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남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주	_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8. [피키즈도넛타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피키즈 도넛타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해당없음	해당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피키즈도넛타임]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해딩	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피키즈 도넛타임]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3,34]쪽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1 4	1 4	/ Γ Έ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7135
합계		연중	49,137	49,137	0	
	소계		2,598	2,598	0	
광고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소계		46,539	46,539	0	
판촉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0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IBK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마포중앙 기업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99번지	02-717-790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 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피키즈도넛타임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화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SGI 서울보증]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해당없음	
보험계약자	해당없음	
피보험인(보험금을	해당없음	

지급받는 자)		
보험기간	해당없음	
보험금액	해당없음	
보장범위	해당없음	
지급조건	해당없음	
보험금의 수령절차	해당없음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mathbb{Q}}$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피키즈 도넛타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6,000]				
가입비	5,000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오픈 교육비	1,0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현금)보증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담보목적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합계	5,000
가입비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3,000 ~30,000]				
간 판	협력업체 (미지정)	2,000	200	별도협의	협력업체 주문전	전면 5미터 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 (미지정)	15,000	1,500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취소	36m2 (약10평기준)
최초 공급 상품 비용	피키즈 도넛타임	1,000 ~3,000	100 ~300	별도협의	협력업체 주문전	변동될 수 있음 #별첨1참고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피키즈 도넛타임	5,000~ 10,000	500 ~1,000	별도협의	협력업체 주문전	변동될수 있음 #별첨1참고

[위 표의 금액은 가맹점 오픈 시 추정금액이며, 가맹점 운영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 감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701-9910)	● 매장 보유 업종변경 상담시 : 담당자 배정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입점 여부 판단 → 가맹희망자와 입점 시기 및 절차 상담 → 동의 후에 입점 결정 * 특정지역 입점상담(매장 미 보유) :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이며 보건증 발급가능한 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이며, 보건증 발급가능한 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피키즈 도넛타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잔금
금액(천원)	5,000	총액의 10%	50%	4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5일	오픈일 -2일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피키즈 도넛타임	광고시 분담	익월 15일	미실시	협의된 광고 집행시	광고진행 전 당사와 협의 하여 결정
판촉분담금	피키즈 도넛타임	행사별로 분담 등	익월 15일	미실시	협의된 광고 집행시	판촉진행 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교육훈련비	피키즈 도넛타임	100	교육 실시 3일 이전	미실시	교육실시후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⑤	지정업체	실비	간판 변경 후 7일 이내	미실시	공사 완공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지정업체	실비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미교체 미보수	협의 된 교체/보수 집행후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정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개선후 5일이내	미실행	협의사항 실행후	점포환경개선사 항이 발생시 여 당사와 협의하 여 결정
POS 사용료	지정업체	실비	익월 5일	미사용	사용후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④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피키즈 도넛타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피키즈 도넛타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

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 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피키즈 도넛타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피키즈 도넛타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 [®]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사항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피키즈 도넛타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없음		

2) 당사가 [피키즈 도넛타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 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 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①	제한내용 및 조	위반시 책임	비교
피키즈 링도넛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1회위반: 구두 경고	본사와 합의 되지
피키즈 수제크림도넛	제품 중 매장운영에	2회위반: 2회 이상	않고 독단적으로
피키즈 케익도넛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저트는 본사와 합의 후	서면 시정요구	타브랜드 제품을
그 외 피키즈에서	진열 판매 할 수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판매할 시 위반의 책임을 부과합니다.
공급하는 디저트 상품	있습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이하	주류	기 대상대 망별도 -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고등학교 재학생 이하	담배	그 까메하 수 역으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

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되기고 그레시그	9,000, 9,000(00)	이번그 중페시키세 고기	매장여건에 따라
피키즈 글레이즈	2,000~2,800(80g)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10%내에서 차별
피키즈 수제크림도넛	2.0004.900(190~)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운영 가능합니다.
의기스 구세크림도닷 -	3,000~4,800(120g)	결절도 홈페이지에 중시	매장별 가격운용
피키즈 케익도넛	2,000~3,000(60g)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정책은 본사와
러기를 계탁되었	2,000° 3,000(60g)	클럴도 급페이시에 6시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하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등 글인 집중 점기 -	가맹본부	계열회사
도넛을 주 메뉴로 하는 카페	피키즈 도넛타임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행정구역당 1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피키즈 도넛타임'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피키즈 도넛타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_	100%	_	_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 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피키즈 도넛타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 단위 재 계약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40조 1-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 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40조 1-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0조 1-3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40조 1-4항
○ [피키즈 도넛타임]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 키지 않은 경우	40조 1-5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0조 1-6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물품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41조 1항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12 10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1조 2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	 41조 3항
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412 38
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및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	
의 월평균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	41조 4항
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의 장래의 기대이익 상실분에 대	
해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41조 5항
3. 가맹본부가 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 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	 41조 6항
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12= 0 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1조 2-1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41조 2-2항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1조 2-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41조 2-4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41조 9-5화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1조 2-6항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41조 2-8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 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1조 9-9화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는 승인결정시까지 계약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연체된 채 무액이 있는 경우 모두 지급하는 등, 양수인이 해당 가맹점을 가맹계약에 부합된 상태로 아무런 문제없이 양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면담 포함, 30일 가당 조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5인 소요) → 가매저우여권 이	문의: 지원팀 (02-701-991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구·문 상속	사등 역부(조건) 상속인 사후통지시		설차 ① 상속개시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 본부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상속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 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내기 역은 자명 기 등이 가맹된 부는 상속인에 제42조 제 2항 및 제3항 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다. ④ 상속인에 대해 서는 제15조 의 하여야 다. ④ 상속인에 대해 대해 대해 대한 교육 비는 면제되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지 아니한다. -	-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_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지역 내에서] 귀하가 [피키즈 도넛타임]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도넛을 주 메뉴로 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지원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피키즈 도넛타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8시간 이상	365일 중 300이상 영업	문의: 지원팀 (02-701-99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1시 또는 12 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①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공정위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과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피키즈 도넛타임]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11	광고	부담비율		보다 자카	nj –
구분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전액부담	없음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없음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	"
	팜플렛 등 제작	전액부담	없음	"	"
	매장POP	매장 공급	기획제작 급분에 한해 상부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할인카드 ·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해당사항없 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절차는 필요없으나, 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협의를 통해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협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판촉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가맹사업자에게 제시 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할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매뉴얼,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한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동종의 영업행위를 할 경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15(1일)	5,0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1,000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인테리 장비, 이 생기 등의 객관적 이 등의 객관적 이 등의 객관적 이 등의 객관적 이 이 하의 이 어떻게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 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 맹사업의 통	는 점포환경 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90일 이내에 가맹	이내에 가맹 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경우 함)되는 경우 자맹본부 잔여 기간에 부담액 이 나하지 아니하지 아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	

			1 -1-1111		
			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		
			ㅇ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 가맹본		
			· · · -		
			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		
			차 : 1차 지		
			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 기교이 기기	소기로 그리네스	~ 되 벡 되 가 어 ~j	의 40%)		
ㅇ점포의 시설,	○간판교체비용	ㅇ가맹점사업자			
장비, 인테리	ㅇ인테리어 공				
어 등의 노후	사비용(장비·	(임차료 등),			
화가 객관적	집기의 교체	월평균 매출			
으로 인정되					
는 경우	한 실내건축				
ㅇ위생이나 안		-점포의 확장	,,	"	
전의 결함으	되는 일체의	또는 이전을			
로 인하여 가	비용. 단, 가	수반하지 않는			
맹사업의 통		점포환경개선			
일성을 유지					
하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사업자가 추	또는 이전을			
영업에 현저	가 공사를 실	수반하는 점포			
		= ====			<u> </u>

한 지장을 주	시함에 따라	환경개선 : 50		
는 경우	소요되는 비	~80%		
	용은 제외)	-단, 집기·장비		
	ㅇ집기·장비교	교체비용은		
	체비용	20% 부담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3일간	100만원 한도	
판촉지원	가맹점의 지역행사와 연계한 자체 행사 기획 시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현물지원	행사기간에 따라 상이	가맹점과 협의 후 결정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가맹점에 필요한 판매용집기를 행사기간동안 무상대여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반품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CRM	우수고객에 대한 고객 유입 DM발송	없음 (전 가맹점 해당)	분기별 1회	소요되는 비용 전액 본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피키즈 도넛타임]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피키즈 도넛타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피키즈 도넛타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신규오픈교육	2일(16시간)	1,000	최초 계약시 필수
보수 교육	1일(4시간)	100/인당	권장 사항
신입직원교육	1일(4시간)	100/인당	권장 사항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오픈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1조 1항에 따라 개점이 보류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직영점 피키즈 도넛타임 대흥본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 6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18,755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 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 재한 것입니다.

[별첨1] 설비 및 집기리스트

I. 설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 내역은 귀하가 가맹점 운영 시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 등이며 당사의 개점 승인을 위해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거래형태 "권장"인 품목을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과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매장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구입 수량과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상기 리스트는 시장상황 및 당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Ⅱ. 집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